

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

2026. 5.

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

(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)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지방우정청 위치 “광주광역시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하는 내용으로 「우정사업본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7. 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

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(우정서기 78명)을 직급 상향 조정(우정주사보 32명) 및 직급 정비(우정서기보 46명)하고, 그 정원 78명(우정주사보 32명, 우정서기보 46명)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,
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, 보험사업단에 상품개발팀,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,

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, 서적,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9항에 제15호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(준등기 포함)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16. 통상우편 경쟁분야(서적, 상품안내서 등) 운영에 관한 사항

별표1 지방우정청의 관할구역에서 전남지방우정청 위치를 “광주광역시·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한다.

별표 3 중 우정주사보 “5,066”을 “5,098”로, 우정서기 “7,333”을 “7,255”로, 우정서기보 “7,591”을 “7,637”로 한다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78명(우정주사보 32명, 우정서기보 46명)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, 2028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별표3의 정원 78명(우정서기 78명)으로 본다.

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안전보건팀, 상품개발팀, 법무팀은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노사협력담당관, 보험개발심사과장 및 준법감시담당관이 각각 수행한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우편사업단) ⑨ 소포전자상거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~14.	제7조(우편사업단) ⑨ 소포전자상거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~14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5.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(준등기 포함)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<신설>	16. 통상우편 경쟁분야(서적, 상품 안내서 등) 운영에 관한 사항

■ [별표 1] 지방우정청의 관할구역(제13조관련)

	현 행	개 정 안
전남지방우정청	광주광역시·전라남도	전남광주통합특별시

■ [별표 3]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

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23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.	.	.	
우정주사	5,066	5,098	+32
우정서기	7,333	7,255	△78
우정서기보	7,591	7,637	+46
.	.	.	